

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를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연락두절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12. 19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40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반환금액	처분사유	
현○경	1964.03.27.	대구광역시 수성구 (이하생략)	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 및 납부안내	683,860원	수급자격 불인정(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피보험 이력 삭제)으로 실업급여 과오급금 반환 처분	연락두절 및 폐문부재

4. 공고 기간: 2023. 12. 19. ~ 2024. 1. 2. 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과 박정미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Tel : 053-667-6749, FAX : 053-720-4021)